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은 2025. 5. 27.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현황,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i) 각자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금융회사 내에서 (대표이사 간) 총괄관리 책무의 배분 원칙 (ii)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간 겸직 이슈 (iii) 상/하위 임원 간 책무 배분 기준 (iv) 빈번하게 누락되는 책무 대상 임직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 권고사항을 발표한 배경 및 시사점을 다루어, 향후 금융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책무구조도를 준비 및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 1. 2.까지 금융지주 및 은행 18개사 대상으로, 이어 2025.5.22.까지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취지로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투·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2025. 5. 27.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 책무구조도 마련 시 주의사항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투·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책무 배분 필요

금융기관이 각자대표를 선임한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기준이 부재하여 각자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하여 책무를

Related Areas

금융규제

기업법무 및 금융

Contact

신영수 변호사

02-528-5514

ysshin@yulchon.com

김시목 변호사

02-528-5764

smkim@yulchon.com

신현화 변호사

02-528-5600

hhshin@yulchon.com

윤종욱 변호사

02-528-5648

jwyoona@yulchon.com

최홍준 변호사

02-528-5766

hongjunchoi@yulchon.com

도효정 변호사

02-528-5955

hjdoh@yulchon.com

추수현 변호사

02-528-5315

shchu@yulchon.com

임창주 수석 전문위원

02-528-5679

cjlim@yulchon.com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혼합배분)하는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책무구조도 마련**이나 **내부통제등 정책의 집행·운영** 등 책무의 성격상 '전사적 차원에서 점검·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경영관리조직을 소관하는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하는 것이 적절하고, 책무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이면 각 대표에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겸직 시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의 경우 전체 53개의 금융회사 중 25개의 금융회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는 총괄 관리의무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지배구조법 제15조 제4항, 제30조의4 제2항),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자기 감독 등 이해상충의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한 금융회사의 사례를 예시로 안내하였습니다.

(3) 상위임원의 책무가 하위임원에게 배분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은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책무체계도 상 하위 임원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도 소관 그룹 각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에 대해 점검할 책임을 배분받는 등 하위임원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만을 수행하는 경우나, 상하 보고체계를 가진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에게 '소관조직의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부여한 경우를 주요 미흡사례로 지적하였습니다.

(4)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 등에 대한 책무 누락 주의 필요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직원이 내부통제등이 필요한 특정 업무를 수행 및 감독한다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i) (사외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도 직무 관련업무를 수행할 경우 직무 배분 대상 임직원에 해당하며 (ii) 전결권이 없더라도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책임을 부담하는 임직원이라면 직무구조도 대상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iii) 특정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확정할 때 조직규정 등 내규 이외에도 외부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특정 임직원의 업무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직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는 해당 직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고, 만약 직무 배분 대상 임직원에 해당함에도 직무구조도에서 해당 임원을 누락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기재하는 경우 “직무구조도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 약 10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직무구조도 마련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겸직시 이해상충 이슈, 공동대표이사 이슈, 상하위임원의 중층 구조에서 직무 배분 이슈 등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각 회사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에 고려하여 각자의 기준에 따라 직무구조도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 등을 위하여 금번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면서 직무구조도 작성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개별·구체적 사정만을 고려하여 직무구조도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범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향후 정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무구조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컨설팅 내용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 금융기관들은 직무구조도 마련과 관련하여 금번 안내된 사항 외에도 컨설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를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금융규제팀**은 다양한 금융회사의 직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한 업무 경험이 있고, 다수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컨설팅 과정에 참여하면서 각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컨설팅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갖추고 있으므로, 기 제출한 직무구조도의 변경·보완이 필요한 금융회사, 향후 새롭게 직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금융회사를 위한 최적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